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퇴직연금블루칩바스켓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부책임운용역 변경 (조익환 → 여종훈)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으로 인한 투자위험등급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2.02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하나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하나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하나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하나UBS 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하나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1. 하나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하나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2월 2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부책임운용역 변경 (조익환 → 여종훈)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으로 인한 투자위험등급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주석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UBS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목 추가>**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구에 관한 사항	(1) 투자대상 하나 UBS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내용 :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증권 하나 UBS 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내용 :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등 국내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 UBS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투자대상 <삭제>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내용 :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 하나 UBS 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내용 :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등 국내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이상을 투자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비교지수 : (매경BP종합채권지수*60%)+(KOSPI*40%) 주)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추구하는 퇴직연금모투자신탁,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블루칩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비교지수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듀레이션3.5년±0.5년) * 60%)+(KOSPI * 40%)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매경BP종합채권지수*60%) +(KOSPI*4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UBS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UBS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UBS 태극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삭제>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5.12%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7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비교지수 : (매경BP종합채권지수*60%)+(KOSPI*40%) <신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듀레이션3.5년±0.5년) * 60%)+(KOSPI* 40%) 주2)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매경BP종합채권지수*60%) + (KOSPI*4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5등급(낮은 위험)
I 집합투자 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퇴직연금채권모투자신탁,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태극블루칩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하나UBS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
I 집합투자 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퇴직연금채권모투자신탁,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태극블루칩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 - **비교지수** :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하나UBS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 - **비교지수** :

	(매경BP종합채권지수*60%)+(KOSPI*40%) 주)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운용을 추구하는 퇴직연금모투자신탁,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블루칩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매경BP종합채권지수*60%)+(KOSPI*4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하나UBS퇴직연금 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듀레이션3.5년±0.5년) * 60%)+(KOSPI * 40%) 주)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삭제> **3.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생략) (주석 추가)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듀레이션3.5년±0.5년) * 60%)+(KOSPI* 4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매경BP종합채권지수*60%)+(KOSPI*4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5.12%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7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2.02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2.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2월 2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주석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 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

		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자투자집합투자기구]**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모투자집합투자기구]**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나. 투자제한** **[자투자집합투자기구]** (생략) **[모투자집합투자기구]**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자집합투자기구]** <삭제>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나. 투자제한** **[자집합투자기구]** (생략, 현행과 동일)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자집합투자기구]** <추가>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자집합투자기구]**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10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0.46%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40%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 비교지수: (KIS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1년이하통안40%+회사채50% +call 10%)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10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IS종합채권지수

	<추가>	잔존만기1년이하통안40%+회사채50%+call 1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투자대상**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1년이하 통안40%+회사채50%+call 1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IS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1년이하 통안40%+회사채50%+call 10%)를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투자대상** <삭제>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100%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석 추가)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10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IS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1년이하 통안40%+회사채50%+call 1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0.46%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40%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인Best 신종MMF(K-1호)[국공채]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2월 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투자 대상자산 등)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2.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 1 항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어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	제 1 항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제 2 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제 2 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30%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제 3 항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2월 2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채무증권 (채권, 기업어음) 남은 만기가 5 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 71 조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7.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어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를 초과하여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채무증권 (채권, 기업어음)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7. 환매조건부매매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최상위등급 및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타투자제한>**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투자한도>**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타투자제한>**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 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현 행과 동일)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년도 2014.11.30**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 2014.11.30**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 (2015.12.01~2016.11.30)**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2015.12.01~2016.11.30)**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순차적 연번 변경)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생략)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생략)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생략, 현행과 동일)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1.재무정보** (생략)	**1.재무정보** (업데이트)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추가)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 1) 비교지수 : Call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과세**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2.02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4.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회사채]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2월 2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사항	(주석추가)	주 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회사채]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회사채 및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이하 생략)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회사채] (3) 투자제한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이하 생략)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삭제> (3) 투자제한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 1 항에 따른(이하 생략)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회사채]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나.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회사채] **(3) 비교지수**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50% + KIS종합채권지수*5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므로,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50% + KIS종합채권지수*5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은 채권(국공채 및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비교지수**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100%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은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장기증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7%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37%**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50% + KIS종합채권지수*50% 주)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2008년 12월 31일)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100%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50% + KIS종합채권지수*5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회사채 및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회사채 및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이하생략)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이하생략, 현행과 동일)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50% + KIS종합채권지수*5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므로,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50% + KIS종합채권지수*5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회사채]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석 추가)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100%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주1)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10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50% + KIS종합채권지수*5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7%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37%**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대한민국1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2월 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7년 2월 2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

	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2월 2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8.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8.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76% 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21%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년도 2015.1.14**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 2015.1.14**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 (2016.01.15~2017.01.14)**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2016.01.15~2017.01.14)**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 연번 변경)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7년 2월 2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76%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21%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2월 2일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2월 2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4.94%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56%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년도(2015.01.17~2016.01.16)**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2015.01.17~2016.01.16)**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16.1.17~2017.1.16)**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6.1.17~2017.1.16)**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 연번 변경)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

	준 예시표 (생략)	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추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1 조에 의해 수익자의 주택자금마련 및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저축계약기간이 7 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감면세액 추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감면세액 추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소득공제추징 - 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 소득공제추징** - 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 분의 6에 상당하는 상당하는 금액 (이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재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주2)에 따라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주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추징 세액 "이라 함)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해지 전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저축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생략)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생략)	**[1]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4.94%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56%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감면세액 추징**	**1. 과세** **[일반과세등에 관한 사항]**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Big&Style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운용역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2.02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Big&Style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2.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2월 2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운용역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제2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성욱 <주석 추가>	김정표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하나UBSBig&Style 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주식]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UBSBig&Style 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주식]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삭제>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 UBS Big & 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추가>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100%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Big&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해 KOSPI 100%를 비교지수로 사용합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 비교지수: (KOSPI50지수 * 100%)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KOSPI 10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50지수 * 1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하나UBS Big&Style 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주식] **(2) 투자대상** 하나UBS Big&Style 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주식] **(3) 비교지수(Benchmark)** KOSPI50지수 * 100%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집중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특히, 대형우량주에 투자하므로 (KOSPI50지수 *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삭제> **(2) 투자대상** <삭제> **(3) 비교지수(Benchmark)** KOSPI 100% ※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나성욱	**3. 운용전문인력** 김정표
II. 집합투자기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구의 투자정보	주1) 비교지수 = KOSPI50지수 * 100%	주1)비교지수 = KOSPI 10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50지수 * 1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Smart Up Plus포커스포트폴리오 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2월 2일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2월 2일 -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1.98%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0.69%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1.98%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0.69%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일본배당 증권투자신탁(제1호) [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2월 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 19 조(운용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및 투자 제한)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

		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7년 2월 2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신설)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2월 2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년도 2015.11.30**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 **2015.11.30**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 (2015.12.01~2016.11.30)**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2015.12.01~2016.11.30)**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 연번 변경)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7년 2월 2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생략) (추가)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주3) 종류형 C 수익증권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되었으며, 나머지 종류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2월 2일

4. 대비표

[변경등록신청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2월 2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71%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7%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말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 (2016.01.13~2017.01.12)**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2016.01.13~2017.01.12)**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